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13

발의연월일: 2025. 1. 7.

발 의 자:한민수・박상혁・임오경

이건태 · 김영호 · 박용갑

한준호 • 서영교 • 백혜련

정일영 · 박해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으로 규정돼 있음.

그러나 최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시 발생한 사건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또,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이는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

이에 대통령 등의 경호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무기 사용시 벌칙 조항을 강화하여 무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경호"란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안 제2조).
- 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무기사용을 인정하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21조제1항).

법률 제 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란 경호"를 "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경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1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호" <u>란 경호</u> 대상자의 생	1 <u>란 헌법과 법률의</u>		
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위 내에서 경호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			
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			
동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	제21조(벌칙) ①		
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			
한 사람은 <u>5년</u> 이하의 징역이	<u>10년</u>		
나 금고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u>1억원</u>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